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8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상회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7. 24.
3. 회부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조의2(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u> <u>1. 국내에서 교육 시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학비 및 장학금의 지급</u> <u>2. 국내에서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u> <u>3.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u> <u>4.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u>

	<u>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u> <u>진료</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을</u> <u>수 있는 후손의 범위 및 예우</u> <u>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사업의 추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¹⁾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교육·취업·출입국 심사 및 체류·의료서비스 이용 등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관한 예우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는 이미 실시 중이며, 교육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을 지원하는 국내 장학사업을 시행 중임.

- 다만, 교육은 단순 학습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교육 지원과는 지원내용이 상이함.²⁾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2) 교육지원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 출입국·체류 우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6·25전쟁 관련 방한사업(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 및 직계자녀 중 희망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출입국우대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동반 3인까지 전용 심사부스 및 전용통로(Fast-Track) 이용 가능
 - (발급 절차) ① 발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국가보훈부가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발급 신청 ② 법무부가 발급한 우대카드를 국가보훈부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교부
- (복수사증 발급) 6·25전쟁 관련 방한사업(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가족에게 복수사증(5년) 발급, 수수료 면제
 - (발급 절차) 국가보훈부에서 법무부를 거쳐 재외공관으로 행사 참석 대상자 명단 사전 송부 →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참전국 우수인재)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에 대하여 체류 상 혜택 부여
 - (혜택 부여 대상) UN참전용사 후손 장학프로그램(보훈부 주관)으로서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이수한 외국인
 - (체류 상 혜택) 일반 유학비자(D계열) 및 취업비자(E계열)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취업 및 체류가 자유로우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자료: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 국내 장학사업>

- ☐ 지원 경과
 - 국가보훈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MOU 체결('10년)
 - * 국가보훈부: 저소득 참전용사 후손 선발 / 한국외국어대: 장학지원(수업료, 기숙사비 등)
 - 저소득 국가 학생 경우 소득물가 격차로 학업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 매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 지원('13년)
 - 한국전쟁기념재단과 MOU 체결, 재단 측이 20만원 추가 지원('17년)
 - 22개 참전국으로 확대 지원('19년)

50%를 국가가 보조함(참고자료 3, 4 참조)

□ 지원 현황

- 총사업비 : 연 81백만원
- 사업방식 : 민간경상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전쟁기념재단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보조사업자 월 20만원 추가 지원
- '24년 학습장려금 지급 현황
 - 지원인원 : 15명(한국외대 12, 서울대 1, 숙대 1, 충남대 1)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75	90	21	24	21	22	21	20	21	17	15

- 대상국가 : 미국 등 7개국
(미국 1, 프랑스 1, 튀르키예 3, 필리핀 2, 태국 3, 콜롬비아 3, 에티오피아 1)

* 자료: 국가보훈부

- 이 외에도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크게 ①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②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③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사업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사업 등
 -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사업 : 평화의 사도 메달 제작·수여, 유엔참전용사 참전기록 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포상 등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및 장학 사업 : 유엔참전용사 후손 초청 청소년 평화캠프, 유엔참전용사 후손 국외 장학금 및 참전용사 영예금 지원 등

□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국내외 생존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대 초반의 초고령이 되어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감사 및 초청행사 보다는 이들의 후손(2-3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수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³⁾
 - 국제보훈 정책대상 측면에서 1차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서 2차 대상인 참전용사의 후손(2-3세대)으로의 확대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국민 또는 미래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와의 연계사업이 중요함.

□ 다만, 위와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원 영역에 있어 유엔참전용사 외 참전유공자 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미래를 대비한 국제보훈 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보훈처 정책용역보고서, 한국정책학회, 2020.12

-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 본인 및 후손 등에 대해서는 교육·취업지원의 혜택이 없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도 국적상실 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에서 제외(보훈급여금만 지급)되고 있음.
-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게 교육, 의료,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위 혜택수혜에서 제외된 유공자들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함.⁴⁾
- 둘째, 손자녀, 증손자녀 등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을 모두 포함시킬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유엔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0세 이상으로, 자녀들의 연령대는 50~60세 전후, 손자녀는 20~30세 전후로 예상됨.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는 증손자녀 등 후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을 유엔참전용사 본인과 후손 중 자녀까지만 적용 시,⁵⁾

4)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시 연간 749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전용사 본인 및 자녀는 교육 및 취업지원이 필요한 연령대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유공자 종류 및 지원 사업 별로 손자녀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바,⁶⁾ 이 경우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
엔참전용사 및 후손까지 교육·취업·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6) 예를 들면, 교육 지원은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은 손자녀까지가 지원대상이고, 그 외 전·공상군경,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등 다른 유공자들은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 아님(참고자료 8, 9 참조)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유엔군 참전 및 피해 현황

지원 구분	참전국		참전 현황		피 해 현 황				
			연인원	참전형태	계	전사	부상	실종	포로
전투 지원 (16)	미 국		1,789,000	육·해·공군	136,884	36,574	92,134	3,737	4,439
	영 국		81,084	육·해군	4,937	1,106	2,674	179	978
	캐 나 다		26,791	육·해·공군	1,761	516	1,212	1	32
	튀르키예		21,212	육군	2,299	900	1,155	-	244
	호 주		17,164	육·해·공군	1,586	340	1,216	-	30
	그 리 스		10,255	육·공군	740	194	543	-	3
	필 리 핀		7,420	육군	468	112	299	16	41
	태 국		6,326	육·해·공군	1,280	136	1,139	5	-
	네덜란드		5,322	육·해군	773	125	645	-	3
	콜롬비아		5,100	육·해군	689	213	448	-	28
	뉴질랜드		3,794	육·해군	125	45	79	1	-
	에티오피아		3,518	육군	658	122	536	-	-
	벨 기 에		3,498	육군	447	106	336	4	1
	프 랑 스		3,421	육·해군	1,296	269	1,008	7	12
	남아공화국		826	공군	45	37	-	-	8
	룩셈부르크		100	육군	15	2	13	-	-
의료 지원 (6)	인 도		627	야전병원	26	3	23		
	노르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덴 마 크		630	병원선					
	스 웨 덴		1,124	적십자병원					
	이탈리아		128	적십자병원					
	독 일		117 (의사)	적십자병원					
합계	22개국		1,988,080		154,032	40,803	103,460	3,950	5,819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눈에 보는 유엔참전국(2023)』 (단, 독일은 국방부 국제정책과 확인)

참고 2

보훈대상자 현황

(2023.12월말 기준, 단위 : 명)

대 상 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832,098 (63,176)	557,929 (37,122)	274,169 (26,054)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8,858	6	8,852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	272,528 (63,176)	105,013 (37,122)	167,515 (26,054)
무공·보국수훈자	135,223	54,703	80,520
재일학도의용군인	286	7	279
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886	411	475
순직·공상공무원	14,618	3,306	11,312
특별공로순직자	16	0	16
6·18자유상이자	368	19	349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2,826	2,245	581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8,114	5,912	2,202
참전유공자(6·25전쟁)	41,688	41,688	0
참전유공자(월남전쟁)	174,513	174,513	0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1,190	1,190	0
고엽제후유의증	49,489	49,489	0
고엽제후유증2세	176	176	0
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희생자)	4,481	3,450	1,031
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3,889	2,852	1,03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112,949	112,949	0

주.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 실인원이 아님. ()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 안함)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참고 3

교육지원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 본인·배우자·손자녀
 - 국가보훈보상5·18·특임 본인, 순직·전몰 재해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자녀

□ 지원 내용

- (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50%를 국가에서 보조

구 분	국·공립대	사립대
국가유공자 본인	면 제	면 제
자녀(손자녀)	면 제	보 조(학교 50%, 국가 50%)

- (학습보조비) 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중·고·대학 및 특수교육과정 재학자에게 지원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특수교육	
		인문	전문		유·초등	중·고등
1명당 연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보훈장학금) 법령상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본인 대학원) 또는 대상자(6·25전몰군경 손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구 분	과정 및 대상		신청절차	금액(학기당)
보훈장학	대학원	본인 및 전몰·순직배우자	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 심사 후 지급	115만원
	특수교육	특수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		30만원
보훈가족장학	대학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		90만원

참고 4

대상자별 교육지원 현황

법률명	생활수준 비교려	생활수준 고려	연령제한 (30세이전)
독립 유공자법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없음	없음
국가 유공자법	1. 1~7급 상이자, 1~6급 상이자의 자녀, 제일학도의용군인 및 그의 자녀 * 상이자(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1. 7급 상이자의 자녀 (전·공상군경, 4·19혁 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 용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 공로자 본인 및 자녀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및 미성년제매
보훈 보상자법	1. 1~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 부상공무원, 1~6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1.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법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 중 중등도 장애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1. 고엽제 정도환자의 자녀 * '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5·18 유공자법	1. 장해등급 1~14급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1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1. 장해등급 12~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 '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 용 2.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및 미성년제매
특수임무 유공자법	1. 상이등급 1~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 1~6급 특수임무 부상자의 자녀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 '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2.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참고 5

유엔참전용사 후손 국내 장학사업

□ 지원 경과

- 국가보훈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MOU 체결('10년)
* 국가보훈부 : 저소득 참전용사 후손 선발 / 한국외국어대 : 장학지원(수업료, 기숙사비 등)
- 저소득 국가 학생 경우 소득물가 격차로 학업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 매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 지원('13년)
- 한국전쟁기념재단과 MOU 체결, 재단 측이 20만원 추가 지원('17년)
- 22개 참전국으로 확대 지원('19년)

□ 지원 현황

- 총사업비 : 연 81백만원
- 사업방식 : 민간경상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전쟁기념재단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보조사업자 월 20만원 추가 지원
- '24년 학습장려금 지급 현황

- 지원인원 : 15명(한국외대 12, 서울대 1, 숙대 1, 충남대 1)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75	90	21	24	21	22	21	20	21	17	15

- 대상국가 : 미국 등 7개국
(미국 1, 프랑스 1, 튀르키예 3, 필리핀 2, 태국 3, 콜롬비아 3, 에티오피아 1)

□ 지원 근거

- 유엔참전용사법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 6

채용시험 가점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시험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전형마다 적용
 - 가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 등 사망자의 배우자·자녀 **10%**, 그 외 가족 **5%**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순직 등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이자 및 보국수훈자 등의 배우자 -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 본인 -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녀

* 참전유공자법 및 제대군인법 적용 대상자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님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하여 채용시험 응시기관에 제출

○ (적용범위) 공무원 6급 이하, 초·중등교육법상 교사 등으로 제한

-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경위 및 소방경 이하 경찰·소방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등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도 해당
- 국·공·사립학교 :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교직원은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공사 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법률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참고 7

체류 및 출입국 관련 규정

□ 체류 우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 (F-2)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신청대상

4) 유학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출입국 우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8

의료지원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대상자 : 247천명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과 같이 직접적인 희생이 있는 본인에게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 대상자 : 1,452천명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보훈대상자와 가족에게 보훈·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30~90%를 국가가 지원
 - 1) 2012.7.1.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는 모두 해당)
 - 2)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는 모두 해당)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 국비진료

(‘24. 6월말 기준)

대 상 구 분		대상인원(명)	진료범위	보훈병원	위탁병원	응급·통원
합계		247,138				
독립유공자		5	모든 질환	○	○	○
국가유공상이자		118,830	모든 질환	○	○	○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자	27,218	모든 질환	○	○	○
	등급미달자	33,764	해당 질환	○	○	○
경상이 제대군인(등급미달)		67,321	상이처	○	○	○

* 고엽제후유의증은 후유증 2세 인원도 포함

□ 감면진료

(‘24. 6월말 기준)

보훈병원			위탁병원		
대상구분	인원(명)	감면율	대상구분	인원(명)	감면율
합계	1,452,095		합계	150,713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포함)	86,217	90%	참전유공자	92,169	90%
무공·보국 등	38,344	60%			
국가유공자 유가족	1,271,800	60%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발병자 포함)	50,601	50%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812	60%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5,133	50%(본인) 30%(유족)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57,732	60%

참고 9

대상자별 의료지원 현황

근거 법률	적용 대상자	보훈병원	위탁병원
① 독립 유공자법	▶ 애국지사	▶ 모든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② 국가 유공자법	▶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재일학도의용군인	▶ 면제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252,000원 한도 내 지급
	▶ 무공수훈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160,000원 한도 내 지급
	▶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국가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2.7.1.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③ 보훈 보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④ 5·18 유공자법	▶ 5·18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기타 5·18희생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5·18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해당 없음
⑤ 특수임무 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해당 없음
⑥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 환자(등급판정자)	▶ 인정 질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경도 판정자는 인정 질병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등급미달자)	▶ 인정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 시 국비 지원	
⑦ 참전 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252,000원 한도 내 지급
⑧ 제대군인법	▶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 시 국비 지원	
	▶ 장기복무제대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군 복무 중 발병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